

의안번호	2220776
의 퇴 인	김한규 의원
회 답 일	2026. 9. 23.
추 계 번호	26F4273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 강화(8년→10년) 및
공제한도 상향(30억원→50억원)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8조의3제1항 (영농상속공제)	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8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,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조의3제1항 (영농상속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,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속세의 변화가 예상됨

- 개정안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강화(8년→10년)로 인한 세수증가와 을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가 동시에 예상
-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은 농지, 초지, 산림지 등이며, 동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
 -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: 농지, 초지, 산림지, 어선, 어업권, 양식업권, 농업·임업·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·저장고·작업장·퇴비사·축사·양어장, 염전
 -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영농에 계속(피상속인 8년, 상속인 2년)하여 종사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

[표 1] 영농상속공제 적용요건

구분	피상속인	상속인
소득세법 적용 영농 (개인영농)	• 상속개시 8년 전부터 영농종사	•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종사
	• 농지·초지·산림지가 소재하는 시·군·구, 그와 인접한 시·군·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	• 좌동
	• 어선의 전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·군·구, 그와 인접한 시·군·구 또는 해당 전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	• 좌동
법인세법 적용 영농 (영농법인)	• 상속개시 8년 전부터 해당 기업 경영	•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
	•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발행주식 50% 이상 계속 보유	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

주: 여기서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]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,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함

□ 그러나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향후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영농상속공제 건수,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자산의 가액, 상속시점 등에 대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 최근 4년간 영농상속공제의 결정현황을 살펴보면, 2021년 483건(2,828억원), 2023년 691건(4,017억원), 2024년 752건(4,670억원) 수준

[표 2] 최근 3년간 영농상속공제 결정 현황

(단위: 건, 억원)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
건수	483	501	691	752
공제금액	2,828	2,777	4,017	4,670

자료 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연도.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인상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